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5. 25 선고 2021가단16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이성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표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삼척시 D 대 476㎡ 중 63/2380 지분에 관하여 2021. 3.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삼척시 D 대 476㎡ 중 63/2380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21. 4. 15. 접수 제36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17차전621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7. ‘C은 원고에게 5,127,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2. 20.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은 1981. 3. 5. 삼척시 D 대 476㎡ 중 63/47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던 중 2021. 3. 19.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C, 피고, F, G 및 망 H(2008. 3. 13. 사망)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21. 3. 19.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21. 4. 15. 접수 제3642호로 2021. 3.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로써 C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63/2380 지분(= E의 지분 63/476 × C의 법정 상속분 1/5)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데,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위 지분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자신이 E의 자녀 가운데 생존 중인 유일한 아들이므로 E의 유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C의 관계, 이 사건 분할협의의 체결 경위, 당시 C의 경제상황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63/238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21. 4. 15. 접수 제36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택순